수갑사용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

❑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 인치시까지 뒷수갑 사용 원칙으로 지침을 변경한 이유

○ '08년부터 '13년까지 수갑 착용 피의자의 도주사례를 분석한 결과, 앞수갑 착용 피의자가 전체 도주 사례(46건)의 47.8%(22건)을 차지하는 반면, 뒷수갑 착용 피의자의 도주 사례는 6.5%(3건)에 불과

○ 이에 검거 당시의 급박한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행동·현장상황·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뒷수갑 방식으로 시갑하도록 하였지만, 도주·자살·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였음

❑ 인권위의 권고에 반하는 지침을 만든 이유

○ 수갑 등 사용지침은 단계별 상황에 따른 수갑 사용에 대한 방식을 정리한 매뉴얼로서,

- 경찰관서(지구대·파출소 포함) 인치 이후부터 유치인 호송시까지는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수갑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앞수갑 방식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

○ 다만, 최초 단계인 피의자 검거부터 인치까지만 뒷수갑 방식을 적용하였을 뿐이고, 이 경우에도 도주·자살·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였음

○ 또한, 금번 「수갑 등 사용지침」을 마련하면서 수갑 등은 그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도록 하였으며, 이중잠금 원칙 명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채택한 것으로 인권위 권고에 반하는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님

2014-JUN-16 14:28 From:NPA 4438866 To:0220380978 P.2/2